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주요 내용은 설치·폐업을 반복하는 영업을 지속하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설치 신고만으로 자격이 발생하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신청기관의 과거 영업이력과 행정처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함. 또한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를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노인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기 의사결정권을 부여함.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이용자 권리구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1월 20일 국회에 제출함.
 - 장기요양기관(2016년 12월 말 기준)¹⁾이 총 19,398개소에 달하고 이 중에서 부실한 재가 급여기관²⁾ 등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후 폐업·재개설을 반복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증가함.
 - 영업 중인 재가 급여기관(13,195개소) 중 폐업이력이 있는 기관 수는 2,739개소(20.7%)이고, 재가 폐업기관 19,434개소 중 동일한 대표자로 재개설한 기관 수가 3,841개소(19.8%)에 달함.
 - 또한 재가 재개설기관(3,841개소) 중 재개설이 3년 이내인 기관수는 2,561개(66.7%)임.³⁾
 - 폐업·재개설을 반복하는 주된 이유는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거나 서비스가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개정안 제출의 주요 배경은 장기요양기관이 법적으로 설치·폐업을 반복하기 쉬운 구조이고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이용자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하였기 때문임.

1)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등)과 재가 급여기관으로 구분됨.

2) 재가 급여기관은 요양 수급자의 자택에서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3) 보건복지부(2017. 1. 19) 보도자료.

- 현행 법률은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어 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정 취소⁴⁾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 평가⁵⁾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설치·폐업과 재개설⁶⁾을 반복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 외에는 보험자가 조사할 권한이 없었음.
- 현행 법률상 노인 등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기 의사결정권이 미흡하고 법률 용어의 불일치로 이용자의 수급신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현재 신청기관이 지자체 장에게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간주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강화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함(§ 31~§ 32).

- 즉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신청기관의 급여제공이력(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 등), 행정처분내용(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수급자 폭행 이력), 기관 운영 계획 등 종합적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명시함.
- 또한 부실 또는 편법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 37).

■ 개정안의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15).
- 서비스 제공 목표 및 방향성 제시와 이용자의 요양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현행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⁷⁾에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함(§ 3).
- 이용자 구제와 관련한 명칭이 소관 위원회 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기존의 이의신청(1차)-심사청구(2차) 명칭을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통일하고(§ 55),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 56)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4) 현행 법률은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하여 지정 취소가 가능함.

5) 보건복지부의 2015년 시설 평가결과, 평가 미실시 365개소, E등급 847개소(23.4%)임.

6)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 청구 기관은 2,851개소(전체의 15.8%)임

7) 현행 서비스 제공 원칙은 ①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② 재가보호 우선원칙, ③ 의료서비스 연계 임.

- 민간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62의 2).
- 개정안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과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노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공·사보험의 소비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회사의 상품 또는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신규 상품은 물론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kiri](#)